

## 2016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공고

2016년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3  
관계부처 합동

###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 (목적) 자치단체 중심의 현장성 제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효율화
  - (대상사업) 각 부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
    - 고용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단련실, 목욕시설, 야외 체육시설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학융합지구 조성
    -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 미래부: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추진체계) 부처 합동공모 → 자치단체 합동(컨소시엄) 신청

## 2. 지원 내용

소관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내용	신청주체	규모
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최대 15억 × 7개소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10억 × 3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훈련·취업지원	자치단체 (10~40% 매칭)	최대 50억 × 10개소
	근로자 건강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대학병원 등 (전액 국고지원)	최대 44억원 × 1개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교육 훈련기관 지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20% 이상 매칭)	최대 20억 × 기관수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한국산업단지공단)	펀드 조성 후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 (민간 제안 사업)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 컨소시엄	사업당 100억원 내외 (개수 미정) * 민간 제안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가능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광역자치단체	미정
	산학융합지구 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2년×30억원), 산학융합 촉진(3년 ×20억원) 지원	산집법에 의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구당 5년간 최대 120억원 내외 (3개지구)
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광역·기초자치단 체 또는 LH·지방공사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정액지원
미래부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단지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광역, 기초) 중심 컨소시엄 (50% 이상 매칭)	최대 9억 × 4개소

※ 사업별 예산은 '16년 잠정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광역자치단체(각 사업 신청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 광역자치단체는 각 사업별 수행기관(기초지자체,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표로 신청
  - ※ 단, 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사업 수행 기관이 전담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현황을 공유

#### □ 제안건수

- 광역자치단체별 2개 산업단지 이내로 신청 가능
  -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후 제출
  - ※ 이전에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지원받은 산업단지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할 것

### 4. 신청 절차

#### □ 공모기간: '15.12.3.(목) ~ '16.1.29.(금)

-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안서접수: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 접수창구: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 (☎)070-8895-7237~7240)
- ※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전자문서 유통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수행 기관이 전담기관에 직접 접수

####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 붙임 참조

- ① 「부처 합동공모 컨소시엄 제안서」(서식 1)
- ② 「부처 합동공모 총괄 계획서」(서식 2)
- ③ 각 사업별 요구자료

## 5. 심사·선정

###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무검토 후 합동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 ※ (구성) 합동심사위원회는 관계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
  - ※ (방식) 합동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PT심사, 현장실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기대효과 등
  - ※ 각 부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한 자치단체 우선 선정

### □ 결과통지

- 최종 선정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일괄 통지 ('16년 3~4월)

##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각 담당부서 또는 시행기관(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으로 문의

【서식1】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제안서					
신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지역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산업 단지명	소재지
①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시(군)	
②산재예방시설설치					
③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예)○○군	400,000	100,000		
④근로자건강센터설치	예)○○대학병원	440,000	0		
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⑥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조성					
⑦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⑧산학융합지구 조성					
⑨산단형 행복주택건설					
⑩산단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2016년도 산업단지 유관사업 정부합동공모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00특별시(광역시)/00도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1. 정부합동공모사업 총괄 요약서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류 일체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2】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등(구조고도화사업, 미니복합타운사업, 노후산단재생사업 등)  
기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정부지원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 등 명시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예시) 부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 직장어린이집 및 주거시설 공동 건축, 뿌리  
산업 특화단지 내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지원 등

**3. 사업 예산(지출 내역 등)**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참여 사업별 세부 공모 내용

---

# 1.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공모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영진 사무관 (044-202-7479)  
근로복지공단 송호암 차장 (052-704-7354)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 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용자 및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 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으로 구성)

###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회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15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5천만원
	용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120만원~520만원	

- ※ 무상지원과 용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 3.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p><b>[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총원율 등)</li> <li>○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li> <li>○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li> <li>○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li> <li>○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li> <li>○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li> </ul> <p>※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

####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및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심사(2차,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2~9)

**□산업단지형(□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대 표 사업주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컨소시엄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참여기업수	대표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수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여성 근로자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보육정원	명
위와 같이 산업단지형(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p>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사업주)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b>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b>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제안서 1부</li> <li>2.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각1부</li> <li>3.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li> <li>4. 컨소시엄 공동 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1부</li> <li>5.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용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li> <li>6. 건물매매계약서 1부(시설매입비 용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li> <li>7. 건물임차계약서 1부(시설임차비 용자 신청의 경우에 한함)</li> <li>8.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 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li> <li>9.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부</li> </ol>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대표 사업 주	사업주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현 장 황	명칭	고용보험 관리번호	
		업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소재지	(연락처 :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제10조제1항 [ ]직장어린이집  
 에 따라 [ ]제29조제1항 [ ]여성고용친화시설  
 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 ]설치비용 융자신청  
 에 동의합니다.  
 [ ]설치비용 지원신청  
 20 .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성명(서명 또는 인)
		전체근로자수 (여성근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 약 서

본인은 산업단지형(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컨 소 시 엄 :

대 표 사 업 장 :

대 표 사 업 주 :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 2.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공모(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사무관 (044-202-7725),  
안전보건공단 이중곤 차장 (052-7030-625)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증진시설·목욕시설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등

- 사업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신청자격

- 아래 신청주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역지자체가 대표로 신청

- ①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
- ②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 협의회 등 사업주 협의회 대표
- ③ 해당 산업단지 내 사업주

※ 참여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로 신청 당시 보험료를 체납중이지 않아야 함

- 지원조건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 공간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업주 협의회 대표 또는 개별 사업주가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설치 위치, 운영방식 등)

##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이용하는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세부 지원품목 안내(예시)】

1.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빔프로젝트 등)
3.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4. 오염물 세척을 위한 샤워시설(목욕시설)
5. 기타 산업재해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공동 이용시설 등

- 지원한도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  
(지원비율: 소요비용의 50% 지원)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비용에 한해 지원(건축비, 관리비 및 운영비 제외)

## 3.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첨부)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

## 4.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전화: 044-202-772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재정지원사업팀(전화: 052-7030-625)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신청서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http://www.kosha.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제출

[첨부1]

<b>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공모 신청서</b>				접 수	201 년 월 일 제 - 호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자 택)	( - )		자택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업체 개 요	사업신청 (해당분야 체크)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단지공단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관리공단 <input type="checkbox"/> 사업주협의체 <input type="checkbox"/> 개별사업주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무실)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설치장소 (예정지)	( - )				
	설치장소 확보유형 (해당분야 체크)	<input type="checkbox"/> 자가건물 <input type="checkbox"/> 임차건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산업단지 분류 (해당분야 체크)	<input type="checkbox"/> 국가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도시첨단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신청분야 (해당분야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 자료실 및 상담실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교육 교육시설 및 기자재 <input type="checkbox"/> 체력증진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시설(목욕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p>위와 같이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공모 참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b></p>						
<p><b>【구비서류】</b></p> <p>1. 사업제안서 1부.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외에 추가로 매칭비용 부담방안,          설치장소 확보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p> <p>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 1부.</p> <p>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p> <p>4.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1부.          ※ 단, 설치장소를 임차하는 경우 대상으로 선정된 후 추후 제출 가능</p> <p>5. 투자금액 근거자료(시설·장비 구입 및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 등) 1부.</p> <p>6. 자체 운영계획서(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1부.</p>						



【첨부2】

## 서 약 서

■ 업무명: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국고보조

본인은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선정 공모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보조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철준 사무관 (044-202-7408)

#### 1. 사업개요

- 사업명: 201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지역 산단의 수요에 맞는 고용환경개선(기숙사·통근버스) 및 인력양성·고용서비스 등 일자리창출 사업
  - (기숙사)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신규 채용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한 월세비용을 지원
  - (통근버스) 대중교통이 부족한 산업단지에 공동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임차비용을 지원
    - ※ 대상단지: 국토부 고시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 (교육·훈련지원사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원
  - (고용서비스) 구직자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구인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지원

#### 2. 제안요건

- 제안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부담

《광역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단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광역지자체	20	30	40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단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기초지자체	10	20	30

○ 지원 배제

-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의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내용

- 공모사업비: 500억원 내외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6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구체적인 지원조건 등 규정)

4. 제출서류: 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http://www.reis.or.kr))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 시행지침 서식 참조

- 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 ② 「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 ③ 「사업계획서」(서식 3)
-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http://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 (<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로 문의

【서식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 안 기 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00-000-0000)
	컨소시엄 (대표자)	(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 업 개 요	사업구분	패키지(특화+연구)		계속여부
	사업총예산	정부보조금 신청액		계속
	원(100%)	원( 80 %)		원( 20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 업 수 행 기 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단체장 (인)</p> <p>○○고용노동(지)청장 귀하</p>				
<p>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p> <p>3.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p> <p>4. 컨소시엄 참여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p> <p>※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5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p>				

【서식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컨소시엄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포럼, 계속)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자치단체대응자금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 특화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등 반드시 기재 - 포럼, 연구, 인프라사업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 결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우선선정 순위  ○ 기대효과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일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추진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style="text-align: center;">중간결과보고서 제출</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style="text-align: center;">최종결과보고서 제출</td><td> </td></tr> </tbody> </table>				일정	추진내용	비고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일정	추진내용	비고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3】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참여기관

(자치단체 및 컨소시엄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조직 및 예산현황 등의 기관 개요 및 주요 실적 등, 별지 활용 가능)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 훈련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4]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 4】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만원  
 - 정부보조금 : 만원  
 - 자치단체 부담금 : 만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사 업 명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총계				
	소계			
	소계			
자치단체 투자 총계				
	소계			
				현물
				현금

- 1)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  
 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  
 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 2) 정부보조금과 대응투자금은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4. 산업단지내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정연 서기관 (044-202-7744)  
안전보건공단 권부현 부장 (052-7030-636)

산업단지 내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명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목 적
  -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 상담 및 작업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신규센터 설치개소 및 예산
  - 대상 : 1개소
  - 운영비지원 가능금액: 최대 440,000천원/개소(단, 센터 설치지역의 직업건강수요를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회에서 지원한도 금액은 조정할 수 있음)
    - ※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월세) 및 장비 구입은 공단에서 집행 또는 구매, 지급(인테리어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에서 설치)
    - ※ 총금액 중 인건비는 80%, 간접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약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 12월에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차기년도 사업의 계속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3년까지 위탁가능
    - ※ 운영기관이 3년간 운영 후 희망시 공모에 참여 가능

○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 센터별 이용자수 : 3,600명(상담건수 12,000건) 이상(단, 센터 설치지역의 직업건강수요를 고려한 지원한도금액 변경시 사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성과 관리지표는 [별첨3] 참조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 수행내용

- 작업관련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질병 조기발견)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강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지도
- 근로자 건강상담결과 작업환경관리 또는 작업관리가 필요한 경우와 소음, 분진, 유해물질, 유해가스, 감염 노출위험(병원체, 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 및 동물매개) 등으로 사업장에서 집단적인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통보(직업병감시체계)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의 경우에는 작업방법 개선,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통한 재발방지 지도
- 상담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 및 기법전수
-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지역 내 근로자 건강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홍보 실시 등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 또는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센터 이용자수 향상 도모
-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근로자 건강상담에 대한 지원
- 기타 업무상질병 예방에 관한사항(지역특성화 사업 등)

※ 연 이용건수 목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설치지역 및 장소

- 설치지역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단위로 건강센터가 기 설치된 지역은 제외
  - ※ 직업건강서비스 소외(오지)지역 우선 선정
- 설치장소 :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2. 참여기관 자격

○ 참여기관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산업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 ※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내 건강센터 설치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약 500㎡, 150평), 건강센터 운영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우대

○ 운영기관 필수인력 기준 및 인력운영방안

- 필수 인력 기준 [별첨1 참조]

총 계	의사	간호사	직업환경 전문가	근골격계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전문가
7명	1명	2명	1명	2명	1명

※ 필수인력 분야별 인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분야별 1인 이상은 유지하여 함), 필수인력 이외 추가 인력은 운영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단, 설치지역의 직업건강수요를 고려하여 필수 인력을 5명-7명으로 조정가능 함)

※ 건강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채용 및 운용 등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운영

- 인력 운영 방안

- 운영기관의 필수 전문인력은 전임형태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사인력은 부득이하게 전담배치가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 상담의 질 향상 및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주 40시간 중 최소 20시간이상을 근무하는 책임전담의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의사가 순환배치 근무 가능
- 자격에서 실무경력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임

○ 기본시설 : 약 500 m2(약150평)

총 계	건강상담실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직업환경 상담실	직무스트레스 상담실
5실	1실	1실	1실	1실	1실

### 3.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제안서 1부.

※ [별첨 2, 3]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10부와 컴퓨터 파일(파일명 : 기관명.HWP)로 저장한 파일 함께 제출
- 제출서류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각 1부씩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착안사항

- 지역특성을 고려한 취약근로자 현황파악 및 지원방안 제시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용 증대 방안모색
- 지역특성상 취약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추진
- 근로자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제시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용 증대 방안모색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및 구축 등 협력·연계 추진방안
- 근로자 건강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색
-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단 지원가능 예산외에 자체적으로 추가재원 확보방안 제시
- 적절한 목표달성 방안 제시
- 자체 모니터링 실시, 고객만족도 향상 등 사업내실화 방안 제시
- 보유인력에 관한 전문성 향상 계획
- 기타 업무상질병예방 활동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야 함

#### 4. 행정사항

- 설치장소의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정기관에서구매, 설치
- 관리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공단에서 구매하여 지급
- 용역결과 종료 시 기관 운영비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 등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궁금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052-7030-636~7)로 문의 바람

[별첨1] 필수인력 세부자격기준

필수 인력	자 격
의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전문의</li> <li>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6]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3. 의료법에 따른 가정의학전문의로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li> </ol>
간호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전문간호사</li> <li>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이상 실무 경력자</li> </ol>
직업환경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위생지도사</li> <li>2. 산업위생관리기술사</li> <li>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취득 후 2년이상 실무 경력자</li> <li>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5년이상 실무 경력자</li> </ol>
근골격계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공학 기술사</li> <li>2.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자</li> <li>3. 운동처방사 또는 운동사 자격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자</li> <li>4. 생활체육지도자(2급 이상) 자격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자</li> <li>5. 인간공학기사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자</li> <li>6. 인간공학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실무경력자</li> </ol>
직무스트레스 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담심리사(2급이상)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li> <li>2. 전문상담사(2급이상)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li> <li>3. 임상심리사(2급이상)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li> <li>4.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li> <li>5. 직업상담사(2급이상)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li> </ol>

[별첨2]

2016년도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공모사업 제안요구서

사업명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상담 및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직업건강 기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
설치희망지역 및 장소	설치 희망지역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의 명칭을 기재하고, 장소는 지역내 센터 설치예정지(시,군,구) 제시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 방문자수 3,600명(상담건수 12,000건 이상) (단, 센터 설치지역의 직업건강수요를 고려한 지원한도금액 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li> <li>○ 2016년 근로자 건강센터 성과지표 [별첨]</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li> <li>○ 사후관리대상자 다발사업장 집중지원</li> <li>○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실시</li> <li>○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질병 조기발견)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강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지도</li> <li>○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초기증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리·운동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재발방지</li> <li>○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등 예방 및 관리</li> <li>○ 직업환경 상담(보호구, 유해물질 관리 등)</li> <li>○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해소 방안제시</li> <li>○ 상담결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 실시</li> <li>○ 상담결과 기초질환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li> <li>○ 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센터 이용 근로자 수 향상 도모, 협력 또는 연계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내 근로자 건강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홍보 실시 등</li> <li>○ 근로자 건강상담결과 작업환경관리 또는 작업관리가 필요한 경우와 소음, 분진, 유해물질, 유해가스, 감염 노출위험(병원체, 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 및 동물매개) 등으로 사업장에서 집단적인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통보</li> <li>○ 직업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시 건강상담 지원</li> <li>○ 기타 센터별 특화사업 계획</li> </ul>
사업기간	계약일 ~ 2017. 12. 31(3년, 매년 12월 계속사업여부 결정)
사업비(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 : 최대 440,000천원/년(인테리어비용 1억원 포함) (단, 센터 설치지역의 직업건강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도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li> <li>* 센터 관리비 및 월임차료는 공단에서 별도로 지급</li> <li>* 총금액 중 인건비는 80%, 간접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 << 제안서 작성 시 착안사항 >>

- 근로자 참여를 적극 유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제시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용증대 방안 모색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및 구축 등 협력·연계 추진방안
- 맞춤형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제시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색
-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달성 방안 제시
- 자체 모니터링 실시, 고객만족도 향상 등 사업내실화 방안 제시
- 보유인력에 관한 전문성 향상 계획
- 기타 업무상질병예방 활동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야 함





## 요 약 문

사 업 명	(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사 업 비	총 계	공단지원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16. 계약일 ~ 2016. 12. 31		
<b>사 업 내 용 요 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목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li> <li>- 사업 수행 방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li> <li>-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li> </ul> </li> </ul>			

##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 2. 사업 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 3. 사업 목표 : 방문자수 3,600명(상담건수 12,000건) 이상

사업명	목표	상반기(1~6월)	하반기(1~12월)
합계			
직업병 등 건강상담			
뇌심혈관계질환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직업환경(작업관리)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특성화 사업)			

※ 연인원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사업별 목표로 설정. 단, 지원한도금액 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 4. 성과지표(※ 지원한도금액에 따른 목표변경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건강센터 최종평가 : 100점

- 종합평가 : 60점(직업건강지수 달성도 : 50점, 노력도 등 10점)
- 운영실태 모니터링 : 30점
- 고객 만족도 : 10점

### □ 직업건강지수(OHI : Occupation Health Index)

:  $[(0.30 \times \text{연간이용자수 달성율}) + (0.30 \times \text{50인 미만 이용율}) + (0.40 \times \text{직업건강활동지수})]$

- ※ 각 항목별 상한점수 100%와 하한점수 60% 적용
- ※ 50인미만 사업장 이용율 80%이상

### ○ 직업건강활동지수(OHAI:Occupation Health Action Index)

:  $[(0.15 \times \text{업무상질병 상담비율}) + (0.20 \times \text{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감소목표 달성율}) + (0.20 \times \text{근골격계질환 초기증상 호전목표 달성율}) + (0.15 \times \text{직업환경인식 향상목표 달성율}) + (0.15 \times \text{직무스트레스 감소목표 달성율}) + (0.10 \times \text{특성화사업 목표 달성율}) + (0.05 \times \text{우수사례 목표 달성율})]$

※ 개선목표 : 뇌심 50%, 근골 80%, 직업환경인식 60%, 스트레스 : 50%

※ 각 항목별 상한점수 100%와 하한점수 60% 적용

- 최종결과 평가대상 인원 : 총 1,300명 이상

※ 목표 : 뇌심 390명, 근골 390명, 직업환경인식 195명, 스트레스 195명, 특화 등 130명  
(센터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방안 제시

## 5.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방안 제시

## 6. 외부 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 7. 사업예산

### 1) 재원조달

구분	공단지원금	기타	총액
금액(천원)			
백분율(%)			100

### 2) 세부예산

#### (1) 공단지원금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시설비			
직무수행경비			
간접비(이익금)			
총계			100

※ 총 소요금액은 범위내에서 산출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총예산의 80%, 간접비는 총예산의 5%를 초과 할 수 없음

#### (2)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

구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율(%)
총계			100

※ 세부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며, 비목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은 제외할 수 있음.

구 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 인건비 :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4대 보험), 일용임금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의 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주차,통행,운송료 등), 광고료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등 □ 피복비 : 직원 피복비 □ 특근매식비 : 특근자 및 행사참여자 매식대 □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및 장비 임차료, 장비리스료, 차량 임차료 등 □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비 :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및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 정비료 등 □ 재료비 : 사업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 교육훈련비 :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비, 임직원 직무와 관련한 교육활동보조비
여 비	□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제경비 등(정례회의비, 행사경비) □ 관서업무비 ; 업무협의,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직무수행 경비	□ 월정직책금 : 효율적인 직책수행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직책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
운영수당	□ 위촉수당 : 사업수행을 위해 위촉한 자에 대한 지급수당 (강사료,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자문료 등)
시설비	□ 인테리어 비용 등
간접비 (이익금)	□ 간접비 : 동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이익금)

- ‘자체예산 집행실적’은 산재예방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집행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산출내역은 ‘산재예방기금 산출내역’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
- 사업비 집행실적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여 작성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인건비는 총금액의 80%, 간접비(이익금)는 총금액의 5%를 초과 할 수 없음

### 8.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 9. 자체 평가 계획

※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10. 기대효과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11. 사업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첨4]

운영기관 선정 평가표

□ 평가대상 기관명 :

분야 및 평가기준		배점	특 점	비 고
총 점		100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업무상질병 예방노력 적정성 - 성과달성 계획 적정성		3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자율성 및 창의성 - 사업수행방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외부(지자체 등)자원 활용의 적정성		50		
인력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 인력 확보 및 투입계획, 사업수행경력 - 사업예산의 적정성, 자부담 정도 -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0		
자체평가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5		
기대효과 - 사업결과 기대되는 효과		5		
심사의견				
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첨5]

## 서 약 서

■ 업무명: 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

본인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선정공모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문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점석 사무관 (044-202-7309)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윤영 차장 (052-714-826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산업단지 내 공동훈련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한 공동훈련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공모

※ 공동훈련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수강생만 지원

## ① 훈련시설·장비비

- 연간 지원한도액 15억원 범위 내에서 총 투자액의 80%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여 지원하고, 6년 이후는 매년 운영기간별 지원한도를 낮추어 지원(지원한도액의 80% 및 50%)
- 훈련시설·장비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대 80% 이내이므로 공동훈련센터의 대응투자는 20% 이상을 요함
- 훈련시설비는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과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편의시설의 임차(보증금에 한한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참조
- 훈련장비비는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핵심장비와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원격훈련 및 현장훈련 등에 필요한 학사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포함)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다만, 교육훈련 이외 행정업무용 사무장비(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각종 OA장비), 냉온풍기, TV 등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나 신규 선정된 해당연도에 한해 일부 지원가능
-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시설·장비 및 실습자료는 시설·장비 의무운영기간(최종 시설·장비비 지원 연도를 포함하여 6년)이 종료되기 전까지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운영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

※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 심사 시 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사업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지원한 시설·장비비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

② 프로그램개발비(연간 1억원 한도)

- 협약기업의 훈련과정에 필요한 직무분석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구매 비용, 교재 및 교보재(실습자료) 개발·보수 등의 비용지원

※ 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전체 지원액수인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③ 인건비 및 운영비(연간 4억원 한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  
- 인건비에 대하여 정부 지원 80% 이내, 자체부담 20% 이상  
이므로 20% 이상은 공동훈련센터가 자체 부담하여야 함

④ 훈련비, 훈련수당(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에 한하며, 훈련 시간은 120시간 이상 해당) 등은 별도지급

## 2. 신청자격

○ 신청 가능 기관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사업주단체(또는 그 연합체) 등

\* 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

○ 공동훈련센터 참여 최소 요건

- 협약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소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컨소시엄 교육훈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 '16년 중 훈련시설을 갖추고 컨소시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선정
- 훈련목표 : 신청기관은 자율적으로 훈련목표 순인원 및 평균 훈련인원 \* 을 향상훈련 또는 양성(채용예정자)훈련으로 구분하여 제시
  - \* 훈련인원 500명 이상(평균 훈련인원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2,400명 이상, 그 외는 1,200명 이상)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평균 훈련인원 = [(A과정 훈련수료인원 × A과정 훈련시간) + (B과정 훈련수료인원 × B과정 훈련시간) + ...] ÷ 8시간

- 훈련대상 : 중소기업 및 사업주단체 회원사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 훈련방법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
-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것 이외에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일부 훈련과정을 위탁할 수 있음
  - \*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
- 협약기업의 수요는 있으나 공동훈련센터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훈련과정 또는 훈련참여인원이 많아 공동훈련센터만으로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양식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안내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www.hrdkorea.or.kr](http://www.hrdkorea.or.kr))

- 문의사항

- 공모관련 사항: 컨소시엄 지원팀 (전화 : 052-714-8262, 이메일 :  
[neonz42@daum.net](mailto:neonz42@daum.net))
- 사업운영 관련 사전 컨설팅: 컨소시엄 허브사업단으로 신청  
(대표 허브사업단 : 041-521-8108, 영남권 허브사업단 : 053-810-1561)

## 6.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조성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중엽 사무관 (044-203-4456)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규하 차장 (070-8895-7222)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투자사업자를 모집하오니 개발사업자, 건설업자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내용

○ 공모 사업분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

○ 투자 대상사업 예시

- 산업집적화촉진분야 :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 창업·R&D·교육분야 : 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 주거·편의·문화분야 : 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 위 3개 사업 분야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

○ 사업대상부지 : 지정제안(첨부4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참조)과 자유제안을 병행. 단, 자유제안 대상은 15개 혁신산업단지\* 내 부지로 한정

\* (국가산단) 반월시화, 구미, 창원, 대불, 부평주안, 여수, 울산미포, 익산, 남동 (일반산단) 성남, 광주하남, 양산, 서대구, 대구성서, 청주

○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로 조성한 펀드를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SPC)의 지분 또는 대출형태로 투자(사업당 100억원 내외 규모). 단, 펀드는 10년 이내에 청산 및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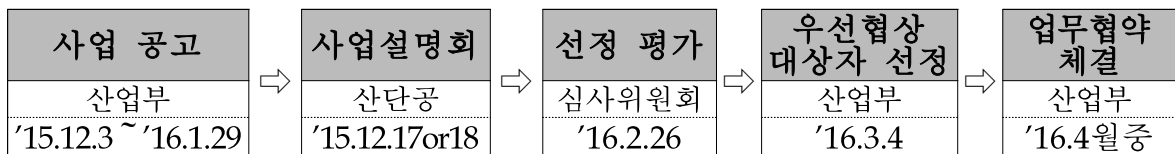
\* 사업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허용

## 2. 신청자격 등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 (사업시행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금융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24호에 따른 금융기관
- 컨소시엄의 업무 범위
  - 사업시행주체(SPC 등) 설립
  - 입주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업무
  - 사업수지, 자원조달계획 등 자금조달 관련 제반 업무
  - 개발사업 행정 인·허가 업무
  - 공사도급 등 용역계약 체결 관련 제반 업무
  - 임대 및 분양(매각) 관련 제반 업무
  - 건축계획 및 시공(공장, 폐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사업대상지 매입 등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 등

## 3. 선정 절차 등

### ○ 선정 절차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 심사 및 선정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서류심사 후 사업제안 PT(발표 및 질의응답)를 중심으로 심사

- 제안서 및 PT 평가 결과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부여(편드 예산범위 내 복수사업자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승계

#### 4. 기타안내

##### ①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팀
-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16.1.29.(금)

##### ②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5부, 신청서, 서약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참여기관 포함)
-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참여기관 포함)
- \* 서식 등 안내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icox.or.kr](http://www.kicox.or.kr)) 참조





【첨부 2】 컨소시엄 사업제안서 양식 예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  
컨소시엄 사업제안서

2016.

○○○ (기관명)

○○○ (기관명)

# 목 차

## I. 주간사업자 현황 ..... ○

### 1. 신청회사 일반현황

- 회사 개요 및 연혁 : 대표자 및 납입자본금 등 주요사항 변동내역
- 회사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회사내 직책, 경력 및 주요 담당업무 등)
- 재무현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2. 개발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개발사업 실적 등 : 부동산 개발사업 건수 및 금액

### 3. 사업시행법인 설립방안

- 사업시행법인 출자규모 및 경험, 투자유치 등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포함가능

## II. 투자사업 시행방안 ..... ○

### 1. 개발계획 방안

- 개발 및 건축 : 개발구상, 개발컨셉, 시설배치계획, 토지매수계획, 건축계획 및 시공계획 (주요시설, 환경시설 등), 사업기간 등

- 입주자 유치, 투자 등 사전수요계획 : 유치계획의 참신성 및 현실성

### 2. 재무계획 방안

- 재원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상환계획, 타인자본 조달 방안(금융기관 약정서 포함),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등

- 재무모델 분석 : 현금흐름 추정, 사업타당성 분석, 리스크 관리 및 신용보강방안 등

### 3. 자산관리계획 방안

- 사업 및 자산관리 : 분양·임대 방안, 마케팅계획, 개발 후 자산관리 및 전략적 투자자의 사전유치 등

- 사업운용 및 관리시스템 : 사업시행법인의 사업시행구조, 관리 경영시스템, 인력참여 방안 등

- 기타 사업비 절감에 관한 계획(경쟁우위 요소 등)

### Ⅲ. 금융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 ○

#### 1. 기관별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 민간투자자 지분 및 컨소시엄 구성
- 금융투자자의 건전성 : BIS(은행), NCR(증권), 지급여력비율(보험) 등

#### 2. 금융투자 방안

- 사업시행법인 지분투자 규모 및 조건
- 대출규모 및 조건
- 금융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기준

#### 3. 컨소시엄 구성의 특징 및 경쟁력 확보방안

- ※ 기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 포함가능

### Ⅳ. 기타 신청회사 등의 제시 자료 ..... ○

※ 작성방법 : 자유로운 서체로 보기 좋게 작성(그림 삽입 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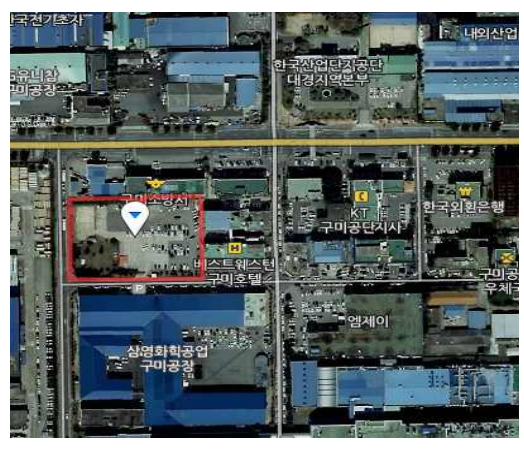
### 【첨부 3】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사업관련 평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 2)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참조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첨부자료 포함 총 10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page 번호 반드시 표시)
- 4) 제본방법은 좌단을 책자식으로 본드 제본하며, 스프링제본이나 끈, 철선 사용금지
- 5)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표를 동일 페이지 아래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 6) 제안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8) 제안내용의 평가 및 기관 선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9)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10)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방문설명을 해야 하며, 제안기관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 1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2) 제안기관의 사업실적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 1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14) 제안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15) 기타 사항
  -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협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협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보안 유지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첨부 4】 지정제한부지 현황

### ① (구미산단) 나대지(산단공 소유)

소재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09-1
토지규모	8,132㎡(2,460坪)
토지이용계획	준공업지역, 지원시설구역
건폐율/용적률	80% / 300%
공시지가	85.4억원(1,050,000원/㎡)
현재상태	나대지(지목 : 대)
토지매각	감정평가금액
특이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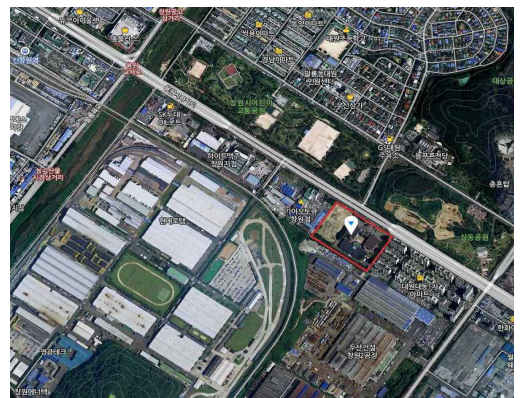
### ② (구미산단) 보세장치장 부지(산단공 소유)

소재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5-29
토지규모	6,452㎡(1,951坪)
토지이용계획	준공업지역, 지원시설구역
건폐율/용적률	80% / 300%
공시지가	74.5억원(1,155,000원/㎡)
현재상태	창고
토지매각	감정평가금액
특이사항	-



### ③ (창원산단) 전시장 부지(산단공 소유)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79
토지규모	32,893.9㎡(9,950坪)
토지이용계획	준공업지역, 지원시설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용적률	70% / 400%
공시지가	315.9억원(960,300원/㎡)
현재상태	전시장(지목 : 대)
토지매각	감정평가금액
특이사항	지구단위계획상 최고높이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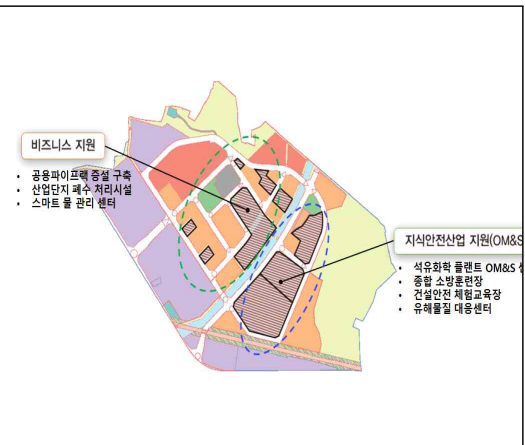
#### ④ (창원산단) 물류부지(산단공 소유)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5, 6 일부
토지규모	12,784㎡(3,867坪)
토지이용계획	준공업지역, 지원시설구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용적률	70% / 400%
공시지가	747,300원/㎡
현재상태	나대지
토지매각	감정평가금액
특이사항	부지내 일부에 '13년펀드사업 및 산학융합지구구성사업 등 추진중



#### 수 (여수산단) 나대지(여수시 소유)

소재지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블럭-1외
토지규모	33,667㎡(10,184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건폐율/용적률	80% / 350%
부지가격	공시지가 119.5억원(355,046원/㎡)
현재상태	분양용지(지목 : 대)
토지매각	감정평가금액
특이사항	-



#### ⑥ (광주하남산단) 하남저수지(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87-2
토지규모	58,622㎡(17,733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용적률	70% / 350%
공시지가	84,100/㎡
현재상태	하남저수지(저수지 용도 폐지 예정)
토지매각	협의를 결정
특이사항	부지일부를 광주시에서 근로자 휴식공간 및 주차장으로 사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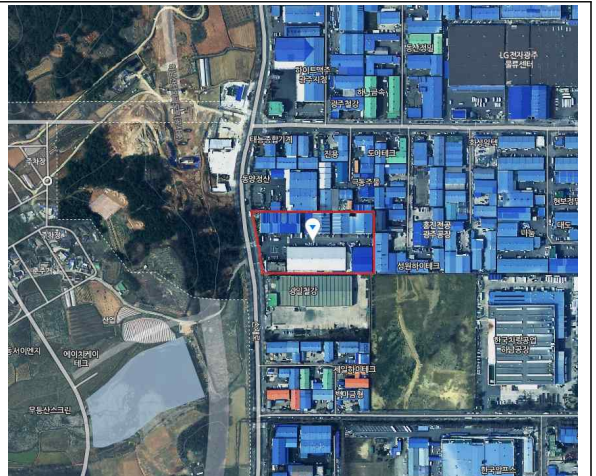
7 (광주하남산단) 공장부지(광동하이텍(주) 소유)

소재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63(오선동 546-11)
토지규모	48,638.8㎡(14,713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구역
건폐율/용적률	70% / 350%
공시지가	240,000/㎡
현재상태	공장 등 생산시설로 사용
토지매각	시세를 반영 협의하여 결정
특이사항	물류업, 물류시설 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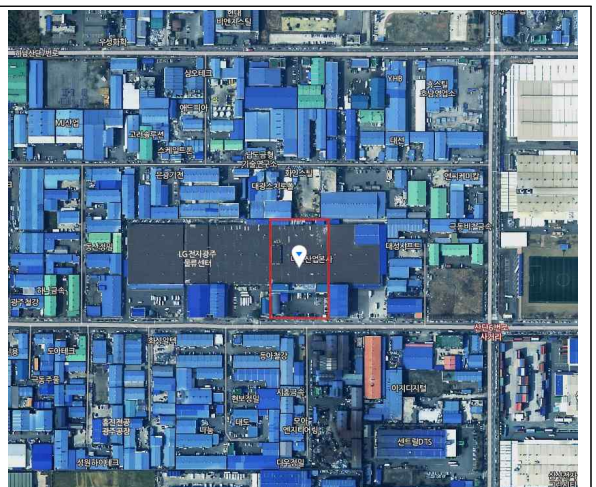
8 (광주하남산단) 공장부지((주)장호 소유)

소재지	광주시 광산구 손재로 392
토지규모	16,528.9㎡(5,000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용적률	70% / 350%
공시지가	275,600/㎡
현재상태	공장용지로 사용중
토지매각	협의후 결정
특이사항	환경관련 기계사업 등



순 (광주하남산단) 공장부지((주)나영산업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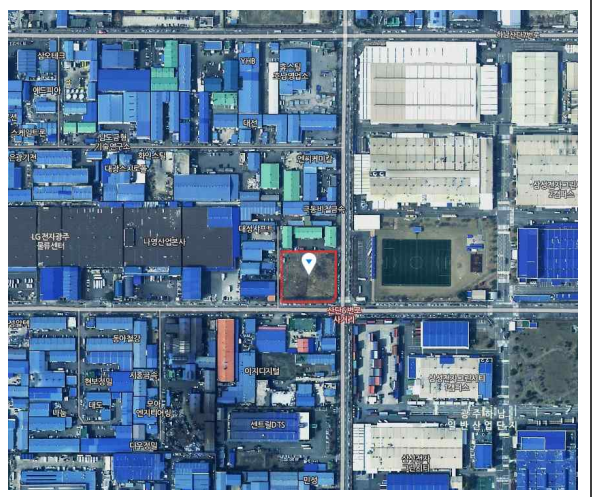
소재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토지규모	13,550㎡(4,099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구역
건폐율/용적률	70% / 350%
공시지가	255,000/㎡(2015.1월 기준)
현재상태	공장가동중이나, 2년이내 이전계획
토지매각	감정가 및 실거래가 기준 매각
특이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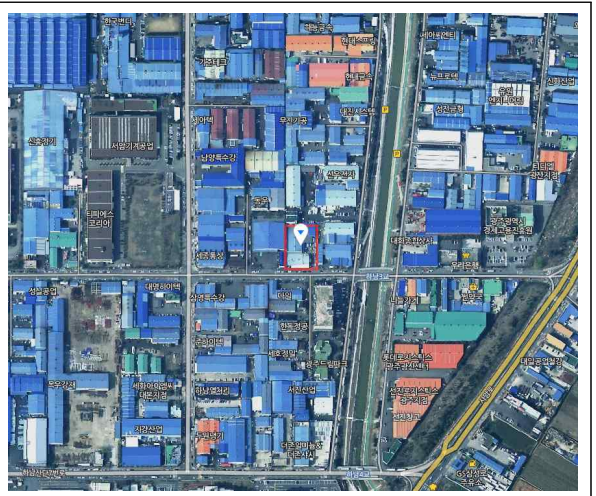
**10 (광주하남산단) 공장부지((주)대도 소유)**

소재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73-6
토지규모	6,596.7㎡(1,996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용적률	70% / 350%
공시지가	364,540원/㎡
현재상태	자가 및 임대공장 운영
토지매각	시세 또는 감정평가후 매각
특이사항	하남, 진곡산단 중앙에 위치



**11 (광주하남산단) 공장부지(선호기업(주) 소유)**

소재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45
토지규모	3,303.3㎡(999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용적률	70% / 350%
공시지가	364,540원/㎡
현재상태	자가공장 운영중
토지매각	시세 또는 감정평가후 매각
특이사항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



**12 (대구성서산단) 주차장 부지(대구시 소유)**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699
토지규모	10,516㎡(3,181坪)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구역, 공공공지
건폐율/용적률	80%/350%
공시지가	19억원(183,100원/㎡)
현재상태	공원, 주차장(지목 : 공)
토지매각	감정평가금액
특이사항	-



## 7.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임진혁 주무관 (044-203-4287)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안춘수 박사 (02-2183-1626)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 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 2. 사업내용

- (특화단지 지정) 뿌리기업이 10개社 이상 밀집하고, 뿌리산업 업종 비중이 70%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 금번 합동공모는 특화단지 지정에만 해당, 특화단지 지원의 경우 상반기에 심사 예정
- (특화단지 지원) 旣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 등 뿌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지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지원

### 3. 신청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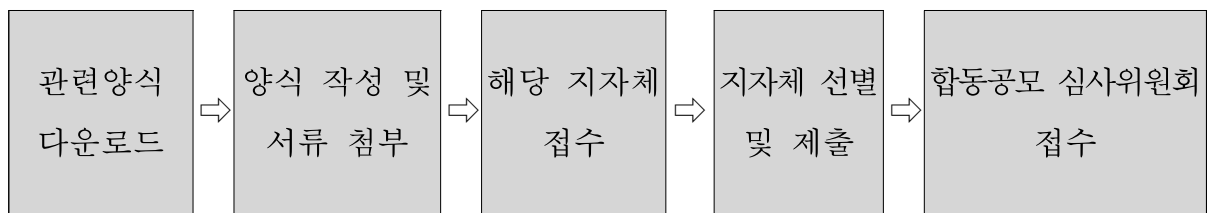
- 단지\* 내 10개 이상의 뿌리기업 및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조성되어 있거나 예정인 단지(단,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 4. 제출서류: 지정요청서(첨부) 및 지정요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



#### <신청접수 구비서류>

-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별첨 2)
- 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별첨 3)
- ③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 ④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실사

-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검토
-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
  - (발표평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사) 서류 및 발표평가 내용을 현장 검증

나. 평가기준

- (단지역량) 단지 또는 구성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단지의 성장 가능성 등
- (협동화정도) 공동시설 활용정도, 구매, 생산, 인력 등 협업정도
- (고도화 계획 구체성) 고도화 내용의 적절성, 자금조달 방안의 구체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
- (과급효과) 경제적 측면 및 지역발전 측면의 과급효과 등

※ 우대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중 혁신산단의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 시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044-203-4287)

## 6.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뿌리산업분야 업종 범위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101	액압 프레스
	29223102	기계 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인발기
	29223803	나사 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4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9201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2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별첨 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소속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E-Mail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m <sup>2</sup>	뿌리산업면적	m <sup>2</sup>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2.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첨 3.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소속기관	작성자 정보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1. 단지 현황

(1) 단지규모

- (입주기업 수, 면적 등 단지 규모를 상세히 설명)

(2) 기반시설

- (구축되어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상세히 설명)

(3) 입주업체현황

- (입주업체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 아래표 필수)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1					
2					
3					
4					
5					
6					
7					

\* 입주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첨부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중 선택

○ 재무현황 (표 필수)

(단위:백만원)

입주업체	자산			매출			부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평균									

\* 입주업체의 재무제표 첨부

○ 인력현황 (표 필수)

(단위:명)

입주업체	종업원수(신규채용 인원 포함)			신규채용 인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평균						

(4) 협동화 현황

○ (입주업체간 협동화 정도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구성기업간 거래 금액, 주문공유 금액 (공동생산), 공동구매 참여기업 수, 인력공유 규모, 공동활용시설 수, 단체활동 등을 상세히 작성

(5) 기타 (수상, 인증, 지정 등 단지의 우수성)

○ 뿌리산업 특화단지로서의 적절성 또는 우수성을 자유롭게 기술

## 2. 단지 고도화 계획

(향후 특화단지로서 단지를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킬 자체 계획)

### (1) 필요성

-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단지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2) 단지의 고도화 내용

-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에너지 사용 절감, 신규고용 등 단지 고도화 방향)
- (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축 계획)
- (설비투자, 협동화 계획, 홍보 등을 특화단지의 고도화 계획을 상세히 설명)
- (단지 인접 뿌리기술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 (3) 추진체계 및 전략

- (민간, 지자체, 정부 등의 역할을 명시)

### (4) 고도화 사업비 총액 및 확보(재원조달)방안

-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 설명)

### (5) 기대효과

- (비용절감 효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발전성, 이미지 개선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작성 요령

### ※ 작성방법(지원신청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 8. 산학융합지구 조성

※문의: 산업통산자원부 입지총괄과 서재영 사무관 (044-203-44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승석 책임연구원 (02-6009-3263)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사업개요

####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 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80억원

\* 국회 예산심의에서 변경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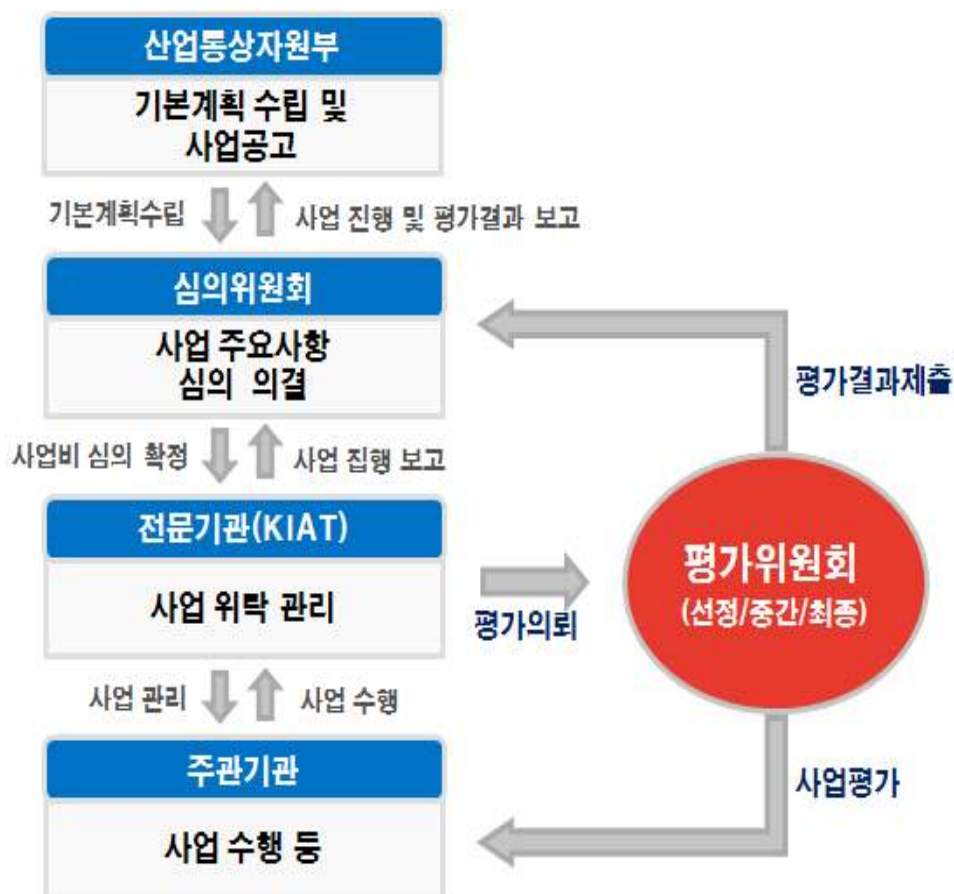
5.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사업 수행 등



7. 사업전문(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II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1.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차년도 사업기간 중에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소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先취업→後진학」 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5개 혁신산단

##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자수 : 3개 지구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 4. 1 ~ 2021. 2. 28 (59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4. 1 ~ 2017. 2. 28 (11개월)
- 지원금액 : '16년도 30억원 이내(정부출연금, 지구별)
  - 총 사업비 : 5년간 240억원 이상(국비 120억원 내외 포함)
    -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3.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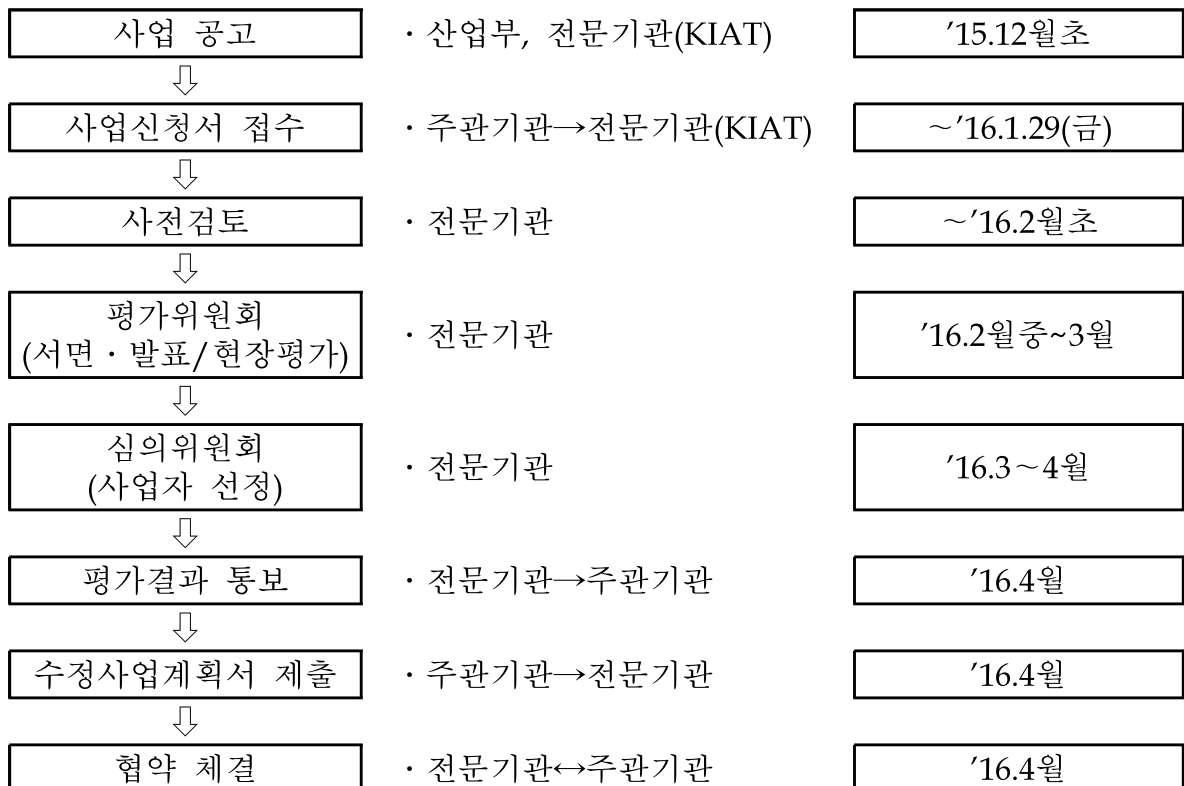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

구 분	사업비(평균)			매칭비율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240억원	120억원 내외	12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60억원	30억원 이내	30억원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 III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신청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신청요령

###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http://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신청서 제출

- 양식교부 : 2015.12.7(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http://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http://www.p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 2016.1.18(월)~29(금)
  -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http://www.pms.re.kr))
    -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2016.1.29(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 접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한승석 책임연구원(02-6009-3263)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후, 6개 사업자 내외를 우선 선정하고,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 6개 사업자 내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면·발표평가지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 현장평가는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내용확인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3개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1.사업의 필요성 (100)	1-1.대상 산업단지 수요 분석 및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0	○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50	○ 산학융합 수요 분석 및 주력업종과 연관성 ○ 참여기업 규모 및 협력 분야 적절성
		30	○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00)	2-1.사업목표의 적절성	40	○ 산학융합지구 조성목표의 적절성 ○ 산학융합지구 운영목표의 적절성
	2-2.사업비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30	○ 산학융합지구 비전의 타당성 ○ 산학융합지구 추진전략의 차별화 및 타당성
	2-3.사업 추진체계	30	○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의 효율성 ○ 법인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산학협력 실적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3.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 (300)	3-1.부지 및 입지 여건	80	○부지 확보 방안(소유권 등)의 적절성 ○산업단지과 입지 여건의 적절성
	3-2.지구조성계획	120	○거점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80	○근로자·학생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계획과의 연계방안의 적절성(지자체 제출)
		20	○지구조성전 사업단(운영본부) 전용공간 확보 계획의 적절성
4.산학융합지구 운영계획 (350)	4-1.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50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 강화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계약학과, 비학위 과정 등 - 산업기술-문화예술 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4-2.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50	○현장실습중심의 교과과정 도입의 적절성 - 프로젝트 Lab, R&D인턴십, Business Lab - 창의형·융합형 교육 지원
	4-3.중소기업 역량 강화	50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기업연구관 운영, 산학융합R&D, R&D 장비지원, Business Solution 센터 등
	4-4.산학융합형 대학운영·교육시스템 도입	40	○ 산업단지캠퍼스 구성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 참여대학 및 학과 구성과 산업단지 수요·지역특성과의 부합성
		30	○대학운영·교육시스템 개편계획의 적절성 - 산업체경력 인정비율(100%), 산업체경력 5년이상 채용비율(30%), 산학협력 Track 신설/확대(50%)
		30	○현장형 학위트랙 운영계획의 적절성
4-5.고용연계 방안	100	○고용연계 방안의 우수성 - 지역 우수기업 발굴,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5.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100)	5-1.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60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유치계획의 규모 및 실현가능성
		20	○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20	○기대효과 - 지역 인재 양성,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6.사업비(50)	6-1.사업비	50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계	1,000	

#### 다. 우대사항(평가지 우대)

##### ○ 산업단지캠퍼스를 멀티 캠퍼스로 조성할 경우

- \* 복수의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 등

#####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  
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  
을 위한 지원 등)

#####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IV 유의사항

###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2.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 9.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문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이상욱 사무관 (044-201-4517)  
한국토지주택공사 권용걸 차장 (044-201-4722)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공모를 실시하오니 뜻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 사업대상 : 행복주택사업

☞ 행복주택이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2. 지원내용

### ○ 건설공사비 지원

구 분	건설단가*	지원내용	호당(45㎡ 기준) 지원금	비고
정부재정	679만원 (3.3㎡ 당)	30%지원	약 2,770.3만원	
국민주택기금		40%융자	약 3,693.7만원	금리: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15년 정부 편성기준 예산이며, '16년 정부(안)은 699만원

\*\* 지자체(지방공사)가 시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1.0%로 인하

### ○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 기본 입주자격 만족하는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계층별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선정

※ 지자체(지방공사) 자체 시행시 각 계층별 공급물량의 70%까지 우선 선정

- 산단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을 입주기업에게 공급 허용

### ○ 행복주택 규모 확대 허용

- 가족단위 거주빈도가 높은 산업단지 근로자 거주특성 고려하여 건설 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일반형 45㎡)

\* 이 경우에도 예산은 호당 45㎡에 맞추어 정액지원

### 3. 제출서류: 신청공문(전자파일 포함) , 사업제안서 및 서약서

####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1. 산업단지 현황 : 단지명, 소재지, 입주기업수, 근로자수, 기숙사 수용인원 등
  2. 대상부지 현황 : 면적, 토지소유현황, 도시계획현황, 현재이용상황, 현장사진 등
  3. 사업시행자 : 행복주택 사업시행자
  4. 주변여건 분석 : 대상지 주변 10km이내 산단(근로자수), 대학교(학생수) 등 잠재 수요와 교통여건(기차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5. 행복주택 세부추진계획 : 호수, 개발계획(안), 추진일정
  6. 자금조달계획
- ※ 사업제안서 별도 양식 참조

###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 심사 (자문) 등 시행후 평가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선정기준 : 기존 산단의 정주여건, 행복주택 수요, 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계획, 사업수행의 적극성 등을 심사

###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정책과  
(044 - 201 - 4517, 4522)

【붙임1】

## 00시 행복주택건설 사업제안서

###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 위    치 :
- 면    적 :
- 세 대 수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시 행 자 :

행복주택 위치 및 주변 산업단지, 대학교 등 수요처와  
교통망(고속도로,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 표기

[행복주택 위치도]

## 2. 주변여건

- 입지여건 : 도심지와의 거리 및 인접지역 개발사업지구 현황 등
- 교통여건 : 10km이내 IC,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 대상지와의 거리 등
- 산업단지현황 : 행복주택 입지예정 산단 및 인접 산업단지

구 분	대상지와의 거리	입주기업(업체)	근로자수(명)	비 고
합 계				
00국가산단	0.0km	000	0,000	
00일반산단				
00농경산단				

- 대학교현황 : 10km이내 대학교 현황

구 분	대상지와의 거리	학생수(명)	비 고
합 계			
00대학교	0.0km	0,000	
00대학교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행복주택 블록 표기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 3. 대상부지 현황

○ 면적 :

○ 토지소유현황

구 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면적(m <sup>2</sup> )				
비율(%)				

○ 건축물현황

구 분	합계	주택	공장	기타
동수(동)				

○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규제사항 등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

○ 현재이용상황

위성사진	현장사진
------	------

[대상부지 현황사진]

#### 4. 행복주택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동수/층수, 주차대수, 부대시설 등

입주계층	비율	계획호수	공급형별	비고
합계	100%	000호		
산단근로자	80%	00호	00m <sup>2</sup>	
젊은계층	10%			
노인계층	10%			

○ 향후 추진계획

-

-

○ 개발계획(안)

<p>행복주택 배치도 (기본구상)</p>	<p>행복주택 조감도 (개략 스케치)</p>
----------------------------	------------------------------

[행복주택 개발계획]

## 5. 행복주택 입주수요

### ○ 수요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주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행복주택 입주기준 부합)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등

### ○ 수요조사 결과

- 거주지역, 거주형태, 입주희망형태, 입주희망시기, 입주희망면적, 도입희망 주민시설 등

## 6. 자금조달계획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검 토 (안)	비 고
합 계		
공 사 비		
보 상 비		용지, 지장물 구분
간 접 비		

### ○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량	검 토 (안)	비 고
합 계	—		
계	—		
정 부 지 원	재 정	사업비×30%	
	기 금	사업비×40%	
사업시행자 조달	—		

### ○ 공사비 산출



【붙임2】

## 서 약 서

본인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선정공모 등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제안서 등 제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재정지원 및 기금융자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였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10.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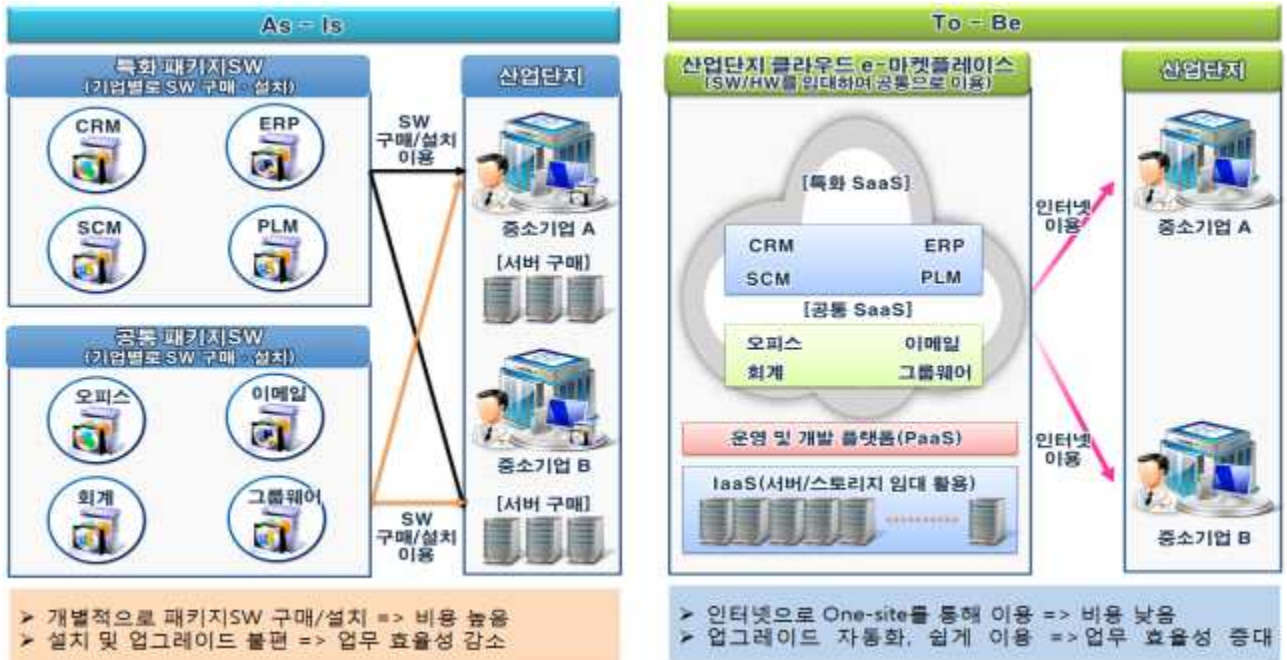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문구선 주무관 (02-2110-184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재성 수석 (043-931-5434)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목적

-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 중소기업의 IT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 및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

<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 방안 As-Is / To-Be >



##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국내 산업단지\* 중 선정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산업단지(2015년도 사업에 기선정된 산업단지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신청 지자체 당 최대 9억원 이내(국비)
-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 사업 신청 전 산업단지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 Public SaaS 및 IaaS, 특화 SaaS 개발 및 이용 지원, Private 인프라 구축지원 등
  -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비로 편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각 산업단지에 대해 단년도 지원)

## 3.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산업단지가 속한 지자체(컨소시엄\*)
  - \* 컨소시엄은 지역IT진흥기관, 클라우드 사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포함하여 구성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산업단지\*를 정하여 신청
  - \* 관할지역 내 복수개의 산업단지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산업단지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가능((예)○○1차 산업단지)
- (신청조건) 사업비 공동부담
  - 지자체는 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매칭
    - \* (예)국비 5억원 신청 시 지방비 2.5억원 이상 매칭
  - Public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기업은 30% 이상 할인 및 서비스 이용기업은 30% 이상 자체 부담
    - \* (예)이용료 10만원 시 공급기업 3만원 할인, 이용기업 3만원 부담, 사업비 4만원 지원

#### 4. 선정 기준

- 사업 타당성
  - 사업 필요성 및 목표 명확성
  - 사업 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 파급 효과
  - 사업의 파급 효과
  - 사업 종료후 클라우드 서비스 지속 이용 및 확산 가능성
- 조직 역량
  - 지자체 및 산업단지 등의 사업 참여의지
  - 추진조직의 역량과 전문성
- 재원조달
  -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5. 신청안내 및 제출서류

- 접수양식
    - 사업안내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자부담 현금 납입 약속서 1부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자격 증명 서류
- ※ [상세제출서류]는 사업 안내서([www.nipa.kr](http://www.nipa.kr)) 참조